

광주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26139(본소), 2018나2614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반환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박재걸

변론 종결 2019. 7. 19.

판결 선고 2019. 9. 6.

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54963(본소), 2018가합 51589(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30.자 협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2,386,377,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8.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1,6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 제3조1)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비 이외에도 이 사건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창지구 인근 도로의 방음시설 등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에서 직접 필요한 간선시설에 필요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개발이익 85,051,375,041원의 50%에 해당하는 42,525,687,520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무 및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 제3조는 원고가 건설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직접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개발이익의 50% 범위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민간투자업체에 의하여 시행하고 이 사건 사업비를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에서 필요한 간선시설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사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협약 제3조는 '피고가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간선시설 부담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업비는 920억 원 정액으로 하며,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발생 시 이익금의 50% 범위에서 추가 부담기로 하되'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피고가 위 추가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다룬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 갑 제9, 14, 23 내지 2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 제3조는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920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개발이익의 50%범위에서 초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최초 및 변경 협약의 체결 경위

- ① 피고는 2000. 2. 29. 원고에게 자금 사정, 대규모 적자 발생 등의 경제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의 축소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3. 9. 피고에게 간선시설의 축소에 동의하면서 개발 후 이익금 발생 시 간선시설의 추가개설을 위한 추가 공사비의 납부를 요청하였다.
- ②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비를 920억 원으로 하고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분할하여 물납하기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도로 건설 시기와 사업비 지급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사업비 사전 확보가 어렵고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므로 사업비 일부의 현금 납부, 사업비 추가 부담 명시 등에 관하여 다시 협의하자고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 ③ 원고와 피고는 2001. 7. 18. 협의를 하면서 사업비 추가 부담과 관련하여, 원고는 사업비 추가 부담을 명시하자고 제안하였지만, 피고는 당초 협의 내용대로 920억 원은 정액 부담하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의 범위에서 추가 부담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원고는 민간 투자 등 여건변화로 이 사건 사업비가 남을 경우 수완지구 인근 도로 건설에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 ④ 원고와 피고는 (a) 피고의 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비를 정액 920억 원으로 하되 피고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50%의 범위에서 추가 부담하고, (b) 원고의 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비가 남을 경우 수완지구 인근 도로 건설에 사용하며, (c) 이 사건 사업비중 212억 원의 지급 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01.12. 28. 이 사건 최초 협약을 체결하였다.
- ⑤ 피고는 2003.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협약에 따라 2003년에 지급하기로 한 21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30일 피고와 이 사건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다.
- ⑥ 한편 피고는 2003. 5. 14. 원고에게 이미 합의한 920억 원의 간선시설비 부담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교통영향평가 초안 협의 시 약 950여억 원 규모의 간선시설 추가설치 의견이

있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수완지구와 관련하여 추가개설이 필요한 간선도로는 원고가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하였다.

나) 위 체결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 ① 이 사건 최초 협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업축소를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면서 개발이익금 발생 시 간선시설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점, 원고와 피고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사업비 증가를 우려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자금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일단 920억 원을 이 사건 사업비 정액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최초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이 사건 협약 제8조에서 민자사업 유치 등으로 이 사건 사업비의 전액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그 잔액은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선시설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비가 남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협약 제3조는 이 사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피고가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고, 이 사건 협약 제8조는 이 사건 사업비가 남는 경우 그 돈을 원고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③ 이 사건 협약 제3조의 문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비를 920억 원으로 정하고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범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사업비 및 추가 부담 사업비의 규모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개발이익의 50% 범위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비의 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추가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본다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 사업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만 추가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볼 경우 920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개발이익의 50% 범위에서 부담하면 되므로 이 사건 최초 및 변경 협약의 해석상 별문제가 없다.
- ④ 원고는 2001. 7. 18. 민간 투자 등 여건변화로 이 사건 사업비가 남을 경우 수완지구와 연결될 수 있는 주변 도로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명시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투자 등 여건변화가 없다면 이 사건 사업비가 남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되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최초 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비의 부족을 예상하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추후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협약 제3조의 내용을 협의하였고, 다만 민간 투자 등의 여건변화로 이 사건 사업비가 남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협약 제8조의 내용을 제안하여 이를 협약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처음부터 민간 투자사업으로 이 사건 도로 개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1. 12. 28.경에야 관보에 민간 투자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였고, 2004. 1. 8.경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지여부가 불확실하였다고 보인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최초 및 변경 협약 제7조(이하 '이 사건 협약 제7조'라 한다)에서 '원고는 피고가 선 납부한 1차 납부금(이하 '1차 선납금'이라 한다)에 대해서 신창지구 공사준공 시점부터 2차분 납부 시점까지의 기간에 이자를 부담토록 하며, 이자율은 공사준공 시점부터 A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되 피고가 개발이익 발생 시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공제토록 한다. 단,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7조의 의미는 피고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50%에 해당하는 추가 사업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돈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1차 선납금의 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면서, 다만 위 제7조 단서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협약 제3조를 이 사건 사업비가 부족할 때에만 피고가 그 추가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본다면, 위 제7조의 해석상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도 이 사건 사업비가 남아 피고의 추가 사업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원고가 1차 선납금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심지어 이자 지급방법인 공제도 불가능하다) 부당한 결과가 생기므로, 이 사건 협약 제3조를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 제3조를 이 사건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만 피고가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협약 제7조의 해석상 ⑦ 이 사건사업비가 부족하여 피고가 추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장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피고가 위 개발이익금으로 원고에게 추가

사업비를 지급하되 원고가 부담할 1차 선납금의 이자를 공제하기로 하면서, 장래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줄 추가 사업비가 없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선납금 이자를 면제하려는 것이고, ㄴ 위 제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민자유치 등으로 이 사건 사업비가 남아 피고가 원고에게 줄 추가 사업비가 없는 경우'에는 위 협약 제7조의 단서에서 정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줄 추가 사업비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선납금 이자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2)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도로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비 중 일부인 704억 원만 사용한 점, 이 사건 최초 및 변경 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도로 건설 비용이 이 사건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고가 개발이익의 50% 범위에서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점 등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비 잔액 216억 원을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수완지구에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는 광로7호선~운남택지 간 도로(이하 '이 사건 추가도로'라 한다)개설에 사용하여 이 사건 협약 제8조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결여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사업비 잔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추가도로를 이 사건 협약 제8조가 정한 수완지구와 직접 관련된간선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도로는 ① 이 사건 최초 및 변경 협약의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3)가 준용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제3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4)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이거나, ②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및 일부 변경 당시 시행되던 구 도로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1항5)에 의하면, 관리청인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인바, 이 사건 추가도로 설치에 피고가 부담한 이 사건 사업비 잔액을 사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도로 개설에 사용한 이 사건 사업비 잔액 216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협의한 후 이 사건 추가도로를 개설하였고, 위 도로는 이 사건 협약 제8조의 수완지구와 관련된 간선시설이므로 이 사건 사업비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추가도로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원고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이 아니다.

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이 사건 추가도로는 2010. 6.경 준공되었는데, 적어도 피고는 이때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때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8. 3. 7.경에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반하는 이 사건 추가도로 개설로 피고에게 부당이 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8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비 잔액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비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비 잔액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상 사용처에 이 사건 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보유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한 원인('이 사건 최초 및 변경 협약'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협약 제8조')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데,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결국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추가도로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서 정한 수완지구와 직접 관련된 간선시설이더라도, 이 사건 추가도로 설치에 이 사건 사업비 잔액을 사용한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도로법상 무효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가) 앞서 살펴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도로의 개설에 이 사건 사업비의 잔액을 사용한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도로법 등 관계 법률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는 '민간 투자 등 여건변화로 위 사업비가 남을 경우 수완지구 인근도로 건설에 사용하자'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협약 제8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비가 남을 경우 수완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선시설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바(특히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신창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선시설에 사용한다는 점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8조의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간선시설'에서 간선시설의 의미는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인근 도로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위 제8조에서는 간선시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간선시설인 도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추가도로는 수완지구 밖의 기간도로(수완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수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까지의 도로가 아니라, 수완지구 아래의 운암지구 하단 경계선으로부터 그보다 아래의 기간도로로 이어진 도로 이다)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및 그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개설의무를 부담하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아니한다.

③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기간도로에 관하여는 달리 그 설치의무 및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구 도로법상 이 사건 추가도로와 같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도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수입으로 그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해야 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그도로의 설치의무 내지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고 그것이 위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측면이나 그 밖에 일반적인 법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수긍할수 있는 내용인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설치의무 내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반드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32805판결 참조).

④ 이 사건 추가도로 설치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추가도로는 수완지구의 경계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완지구의 경계선을 지나 운암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와 그 아래의 기간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야기되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이바지함을 주목적으로 그 조기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추가도로의 개설에 따른 교통편익의 최대 수혜자는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의 입주민인 수완지구 주민들이 다.

⑤ 구 도로법 제64조에 의하면,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추가도로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추가도로 설치에 이 사건 사업비 잔액을 사용한 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협약 제8조 위반을 이유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이 사건 추가도로

개설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도로법상 무효임을 이유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원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비의 잔액으로 설치된 이 사건추가도로는 2010. 6.경 준공되었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는 이 사건 추가도로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3.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명백하므로 피고가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용하, 판사 김동완

별지1

부동산목록

1. 광주 광산구 수완동 1139 대 463.4㎡
2. 광주 광산구 수완동 1140 대 481.9㎡
3. 광주 광산구 수완동 1141 대 486.8㎡
4. 광주 광산구 수완동 1142 주차장 1,159.5㎡
5. 광주 광산구 수완동 1145 대 1,181.5㎡.
6. 광주 광산구 수완동 266-64 전 85㎡
7. 광주 광산구 수완동 266-65 전 327㎡
8. 광주 광산구 장덕동 1310 대 12,997.6㎡
9. 광주 광산구 장덕동 1606 대 636.3㎡
10. 광주 광산구 장덕동 1680 대 1,045.9㎡.

별지2

관계 법령

○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⁶⁾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①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⁷⁾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등)

- ④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5조 제4항 관련)

1. 도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에 한한다.

○ 구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22조(도로관리청)

- ①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 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제24조(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개정법 2003. 11. 30. 시행

7) 개정법 2003. 11. 30. 시행

1) 제1심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

2)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비가 남는데도, 이 사건 협약 제7조에서 정한 이자를 부담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부분 이자를 원고에게 청구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3) 별지2 관계 법령 참조.

4) 별지2 관계 법령 참조.

5) 별지2 관계 법령 참조.